

의안번호	제 840 호
의 결 연 월 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1월 10일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김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40
----------	-----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10일

발 의 자 : 김정일·이정범·유상용

김성대·박병천·박봉순

박진희 의원

1. 제안이유

- 도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다.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라.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마.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바.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첨부

다. 관계부서 협의: 행정과, 창의특수교육과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 학교에 설치하는 학급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설치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항 단서에 따라 66제곱미터 미만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한 경우에는 향후 교내의 일반교실, 특별실 및 기타 공간의 이동·통합 등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2021. 12. 28.>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

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

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시행 2021. 7. 9.] [충청북도조례 제4576호, 2021. 7. 9., 제정]

제4조(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 기본방향 및 목표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내용, 방법, 관련 교재, 교구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7.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8.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대상 교육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9. 특수교육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내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내 특수학급 신규 또는 추가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4조(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매년 3월 실시하는 특수학교 학급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배정 시 신설 또는 증설하는 학급에 한하여 지원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 2025~2027년: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배치계획 근거
 - ※ 2028~2029년: 직전년도 3년간 평균 학급 수 반영

나. 추계 결과 : 10,260,000,000원

- 특수학급 신·증설 지원 : 10,260,000,000원
 - － 2025년 : 45,000,000원 × 47학급 = 2,115,000,000원
 - － 2026년 : 45,000,000원 × 45학급 = 2,025,000,000원
 - － 2027년 : 45,000,000원 × 45학급 = 2,025,000,000원
 - － 2028년 : 45,000,000원 × 46학급 = 2,070,000,000원
 - － 2029년 : 45,000,000원 × 45학급 = 2,025,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세 출		2,115,000	2,025,000	2,025,000	2,070,000	2,025,000	10,260,000
특수교육여건개선		2,115,000	2,025,000	2,025,000	2,070,000	2,025,000	10,260,000
재원 조달		2,115,000	2,025,000	2,025,000	2,070,000	2,025,000	10,260,000
의존 재원	소 계	2,115,000	2,025,000	2,025,000	2,070,000	2,025,000	10,260,000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2,115,000	2,025,000	2,025,000	2,070,000	2,025,000	10,260,0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